



안전한 식·의약 생활을 위한

# 컨슈머 뉴스레터

2021.8.13.(금) Vol.5 / issue 33

##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! -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제정 (2021.7.27)-

**Q. '통합 위해성 평가'란?**

**A.**

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제정 전

제정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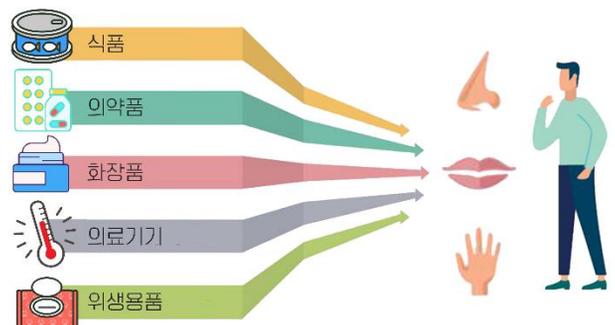
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·관리

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않도록 통합적으로 평가·관리

**Q. 평가대상 제품은?**

**A.**

일상에서 섭취, 투여, 접촉, 흡입하여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, 위생용품 등



**Q. 소비자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?**

**A.**

납, 비소와 같은 중금속,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류 등 미량의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촘촘하게 평가·관리함으로써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→ 앞으로는 소비자가 위해가 우려되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*Q. 위해성 평가 요청방법은?**

**A.**

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소비자가  
① 요청사유, ②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 
③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, 명칭, 모델명 정보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2022년 1월 28일 시행)